

임시운행 재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용자	상호(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신청 사항	차종	차명	
	차대번호	임시운행허가번호판 규격 × (mm)	
	운행목적		
	운행기간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운행허가를 다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시험·연구 계획서 2.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주행한 누적 주행거리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력 및 연구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다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교부한 관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안전운행요건 등 확인 처리기관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	→	검토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결과 통보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	-----------------------	---	---	---	-----------------------	---	--------------------------